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0. 4. 23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숙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20년 4월 13일

○ 회부일자: 2020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 내 모든 교육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의식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정의와 적용범위(안 제2조~안 제3조)

○ 교육감의 책무(안 제4조)

○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
○ 성평등위원회 설치, 구성 및 운영(안 제6조~안 제8조)

○ 실태조사(안 제9조)

○ 성평등 교육 및 문화 조성(안 제10조)

○ 성차별·성폭력의 금지 등(안 제11조)

○ 협력체계 구축(안 제12조)

5. 검토의견

가. 주요내용 검토

-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모든 교육현장에서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평등 의식 및 태도 함양을 위해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의미와 목적을 명시하고, 제2조에 ‘성평등’ 과 ‘성평등 교육’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,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성평등 교육의 적용범위와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5조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9조에 성평등 교육과 성평등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, 안 제10조에 매년 1회 이상 성평등 교육 실시와 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1조에는 학생과 학교 및 소속기관 직원의 성차별·성폭력 근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나. 종합 검토의견

- 최근 스쿨미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학교 내 성평등 교육 강화 및 교육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폭력 근절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. 이에 따라 교육부도 매년 ‘양성평등교육 추진 계획’ 을 수립·추진하고 있고, 지난해 12월에는

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‘남녀평등교육심의회’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.

-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, 충청북도 내 교육구성원의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평등 의식 및 태도 함양을 위해 성평등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됨.
- 또한, 충북교육현장에서 실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문화조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례안의 안 제10조 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이 매우 중요하리라 사료됨.
-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성평등 교육이 시행되고 교육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직원 등 각 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편성 및 교육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세부적인 시행 방안 마련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